

집합투자증권 업무기준

[상품솔루션파트]

2025.12.31 제정

제3편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제1장 투자권유준칙

제1절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은행의 임직원과 제주은행으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나.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다.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1)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2)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계좌 등은 제외)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 (3)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조건부 자본증권)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 (4)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 (5)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6)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 (7) 위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되는 것도 포함)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라.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판매인의 상품숙지의무에 따라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판매인의 상품숙지의무 대상상품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제2절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가.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된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은 전문금융소비자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징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회사에 전문투자자 지정여부 및 잔존 효력기간, 발급번호, 발급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 등은 [별지14]의 ‘투자자 구분 전환 신청서’에 따라 전문금융소비자로 전환 시 전문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해당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라. 주권상장법인이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마.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한 전문금융소비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 바. 은행은 전문금융소비자의 일반금융소비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 (1) 일임·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계약인 경우
 - (2)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중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 라.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마.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사.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아래의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7.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 가.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단,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은적립계좌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이므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은적립계좌라 함은 골드(실버)바(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 실버, 은행 계좌상품(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및 적립식 상품)을 일컫는다.)
- 나. 임직원은 전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다. 임직원은 전항의 경우,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관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성향 분석 등

- 가.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1]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 등은 전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2] '투자자성향 분류'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마.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9]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장외파생상품은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전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 등은 은행이 신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라. 제가항부터 제다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별지5]의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에 따라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관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가. 임직원 등은 은행이 정한 [별지4]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임직원 등은 은행이 신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11]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라.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임직원 등은 (1)호의 투자자에게 (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등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 가.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별지4]의 '적합성 판단 기준'과 [별지12]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 등은 만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가.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나.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10]의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가.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 상품·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다) 전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0)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11) 관계법령등 및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12) 투자상품 권유 시 해당 자격증 보유 및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위
- (13) 투자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라.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 유사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
 -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③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은행은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 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향후

- 전망, 운용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 할 수 있음
- ※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한다.

1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가. 임직원은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설명의무

16. 설명의무

-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과 예금과 비교하여 비예금상품 설명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나. 전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2) 임직원 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 수준, 설명내용 등
- 다.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라. 임직원 등은 제가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마. 임직원 등은 제가항부터 제라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명,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사.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아. 임직원 등은 제가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차.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17.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가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비용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가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용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
 -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용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예: 20%, 40%, 60%)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 (1)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위험
 -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정보
- 라.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마. 은행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임직원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증권시장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 바.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가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 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용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7-1.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 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17-2. 폐쇄형 사모집합투자증권 신규가입 취소 절차 설명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폐쇄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취소가능 여부, 가능 기간 등 취소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절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8. 투자성향의 분류

-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1]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해당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별지9]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나. 은행은 [별지1]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0]의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의 기준에 따라 개인의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 다. 임직원 등은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9.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가. 은행은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11]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1) 기초자산의 변동성
 - (2) 신용등급
 - (3) 상품구조의 복잡성
 - (4)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 (5) 환매·매매의 용이성

- (6) 환율의 변동성
- (7)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나.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11]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다.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라.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마. 은행은 [별지11]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도는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의 6단계로 분류하고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는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별지10]의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절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20. 계약서류의 교부

- 가. 은행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나. 은행은 전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다. 은행은 제가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은행은 제가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21. 청약의 철회

- 가. 은행은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은행과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22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2) 계약체결일
- 나.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
- 라. 은행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채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마. 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등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바. 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22. 위법계약의 해지

- 가. 은행은 금소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행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나. 투자자가 전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 투자자가 은행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라. 은행은 제나항 및 제다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3. 손실보전 등의 금지

- 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나. 전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은행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은행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2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칙

가. 시장매매 의무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

임직원은 투자자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해당 매매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동시에 다른 투자자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사실
- (2) 중개 또는 대리 시 매매상대방이 투자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 (3)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하자과 관련한 책임소재

다. 불법거래의 방지

- (1) 임직원은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은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미수금의 처리 등

- (1) 임직원은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미수금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미수금 발생 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은 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 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나)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임직원은 전항에 따른 수탁거부 사유를 계좌개설 시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매매주문의 처리

- (1)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해당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가)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나)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은행이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다)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 (3)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항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가)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나)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다)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 (4) 임직원은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 (5) 임직원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호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은행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임직원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해당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다) 해당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라)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바. 주문 중개

임직원은 투자자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은행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아.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1) 임직원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투자자, 기타 회계법인·신용평가업자 등 시행령 제132조에서 정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에게 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법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을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투자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이 동의할 것

(나)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다)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2) 임직원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나)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다)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13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자. 불법인출 및 신분증 위·변조 방지

(1) 임직원은 투자자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 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투자자가 CMS를 통하여 은행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하는 투자자별 이체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이체한도 초과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5.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가.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나. 자기매매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은 신뢰할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은행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 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은행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임직원 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9)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10)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임의매매의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약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선행매매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은행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2)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바. 투자일임의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 받은 경우
-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MMF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 받거나 증권의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사. 부당한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가.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은행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 및 절차

-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나.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전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 (1) 제가항의 각 호의 사항
 -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7.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가항 및 제나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가항 및 제나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8.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 가. 계약의 체결
 - (1) 임직원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신탁재산의 종류, 수량과 가격
 - (라) 신탁의 목적
 - (마) 계약기간
 - (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사)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아)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 (자)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카)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타)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 (파)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 (하)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 (거)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 (너)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 2)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은행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 4) 특정금전신탁 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더)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9. 신탁업자의 금지행위

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법 제9조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30.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제외한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가.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5]의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조사한다.
- 나. 임직원 등은 전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 정보의 내용을 통하여 [별지6]의 '투자자 성향 및 유형 분류(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용)'에 따라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투자가능기간을 감안하여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구분한다.
- 다. 임직원 등은 제가항과 제나항에서 파악된 투자자 성향 및 유형을 [별지7]의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표'에 의거해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라. 임직원 등은 제가항부터 제다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8]의 ‘적합성 판단 기준(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용)’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이에 불구하고 소극적 맞춤형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유형을 초과하는 운용지시도 가능하다.

- 마. 은행은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바. 은행은 제나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 임직원 등은 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3) 제나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31.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가. 설명의무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환매조건부매도를 권유하는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가) 가입대상, 최소가입금액, 가입기간, 이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 (나) 환매수 가액 등 환매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 (라) 양도 및 질권설정에 관한 사항
 - (마) 약관에 관한 사항
 - (바)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종류 및 보관, 종목대체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환매조건부매도 거래의 성립 및 환매수

- (1)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자가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은행에게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은행은 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 (2)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 (3) 투자자는 약정기일에 은행에게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환매조건부매도 거래의 통지

- (1) 은행은 투자자와 환매조건부매도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매조건부매도 거래 성립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가) 환매조건부매도 가액
 - (나) 환매수의 약정일자 또는 기한
 - (다)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 (라)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 (마) 환매조건부매도 대상 증권 시장의 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 은행은 환매조건부매도 거래 성립 내용을 통장, 매도확인서,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도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2.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가.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나.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다.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3.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가. 은행은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나. 은행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절 보칙

34. 점검

은행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5. 금융투자상품 표준판매절차

- 가. 제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 표준판매절차를 제정·운용한다.
- 나. 제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서 [별지13]의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을 제정·운용한다.
- 다. 은행은 임직원 등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6.01.02부터 시행하며 기존 기준은 폐지한다.

[별지1] 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은행용)	
---	------------------------	---

본 확인서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 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은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은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무가 있으며,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취약소비자 우선 설명 안내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특정 소비자에 해당하십니까?

☐ 만 65세 이상 ☐ 투자상품 무경험자 ☐ 추가안내 희망 ☐ 해당 없음

※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 투자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가능범위는 각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전세금 등 목적이 분명한 자금은 가입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상품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속행위 규제 유의사항 안내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구속행위' 여부 판정에 따라 신용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아래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투자상품 신규 후 1개월 이내 대출 거래 ② 대출 거래 후 1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1. 투자자 구분

☐ 일반 투자자 ☐ 전문 투자자

2. 투자자 정보 변동 여부

☐ 변동 (투자자 성향 재평가) ☐ 변동 없음 (기존 평가결과 재사용)

3. 투자자 정보 확인

다음 질문은 현재 투자자금의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주요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여유자금 투자 ☐ ② 노후자금 마련 ☐ ③ 목적자금 마련(결혼자금, 교육자금 등) ☐ ④ 사용예정자금(전세금, 임차보증금 등) 단기운용
2. 현재 고객님의 투자목적을 고려한 원금보존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 ①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을 추구함 또는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을 추구함 ☐ ②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을 추구함
3.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전액 손실 가능 ☐ ② 70% 손실 가능 ☐ ③ 50% 손실 가능 ☐ ④ 20% 손실 가능 ☐ ⑤ 10% 손실 가능 ☐ ⑥ 원금보존 추구
4.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3년 이상 ☐ ② 2년 이상 3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⑤ 6개월 미만

다음 질문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향후 유지 또는 증가 예상 ☐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향후 감소 또는 불안정 예상 ☐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연금 등이 주수입원
6. 고객님의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ETF는 펀드에 포함	☐ ① 주식형 펀드,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등 ☐ ② 인덱스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원금비보장형 ELS 등 ☐ ③ 채권혼합형 펀드, 국내(해외)채권형 펀드, ELB-DLB, 원금부분보장형 ELS, 회사채, CP 등 ☐ ④ 국내채권형 펀드(국공채), 원금보장형 ELS, ELD 등 ☐ ⑤ 단기국공채, 지방채, 은행 예·적금, MMF, MMT 등

※ 2번 항목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을 추구함', 3번 항목 '원금보존 추구', 4번 항목 '6개월 미만' 선택 시 「낮은위험(5등급)」 이상 상품가입이 제한됩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은행용)	제주은행
--	------------------------	-------------

7. 전체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80% 이상 ☐ ② 60% 이상 80% 미만 ☐ ③ 40% 이상 60% 미만 ☐ ④ 20% 이상 40% 미만 ☐ ⑤ 20% 미만 ☐ ⑥ 비중없음
8. 고객님의 금융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투자상품(펀드, 신탁 등)에 대하여 스스로 투자결정을 해본 적 없음 ☐ ② 예금과 펀드의 차이점을 알고 있고 구별할 수 있음 ☐ ③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특징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음 ☐ ④ 상품설명서를 읽고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9.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없음 ☐ ②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본인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본인 의 의사) 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	☐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	본인	의 대리인	☐ 또는 서명
-----	--------------------------------	--------	----	-------	--------------------------------

■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거래 시 (가족 등 조력자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 문의)

금융투자상품의 주요내용과 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님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제공받고자 합니다.

※ 조력자 정보 제공 시 반드시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력자 정보 제공	☐ 원함 (개인정보제공 동의) ☐ 원하지 않음	
가족 등 조력자 성명	연락처	관계

■ 재권유 금지(취소) 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에 투자권유를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재권유 금지 요청 ☐ 재권유 금지 취소 요청

	투자자 ☐ 또는 서명
--	---

상담직원	☐ 또는 서명
------	--------------------------------



담당자	확인자

[별지2] 투자자성향 분류

투자자성향 분류

은행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점수	성향	유형
81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공격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위험중립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추구형
43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형

[별지3]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은행용)	
---	---------------------------	---

■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

본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는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고객 성명		인격 구분		투자자 구분	
고객 연령		투자자 정보변동		분석 결과	

※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아래 전산 입력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설문 항목		전산 입력 결과
현재 투자자금의 성격	1.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주요목적은 무엇입니까?	
	2. 현재 고객님의 투자목적과 고려한 원금보존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3.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4.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일반적인 투자자의 성향	5.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6. 고객님의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7. 전체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8. 고객님의 금융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9.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 제주은행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079

■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점수	성향	유형
81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공격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위험중립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추구형
43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형

본인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전산입력결과가 (일치) 하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가 산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	본인	의 대리인	 또는 서명
-----	---	--------	----	-------	---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 (2025.12 개정)



(1-1)

담당자	확인자

[별지4] 적합성 판단 기준

적합성 판단 기준

1.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며,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함

2. 투자자 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① 문항별 배점

문항	항목에 따른 배점					
	①	②	③	④	⑤	⑥
1번	7.5	5	2.5	0		
2번	2	0				
3번	10	8	6	4	2	0
4번	5	4	3	2	1	
5번	5	3	1			
6번	5	4	3	2	1	
7번	3	2.5	2	1.5	1	0
8번	1	2	3	4		
9번	평가제외					
나이	2	2.5	3	3	2.5	2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6번 문항은 복수응답 가능하며, 복수응답 시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② 점수계산방법

가. 1번부터 8번까지의 응답결과와 투자자의 나이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44.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 나이를 포함한 1번부터 8번까지의 합이 36.5점인 경우, $36.5 \div 44.5 \times 100 = 82$ 점(소수점 이하 절사)

나. 법인의 경우 나이에 따른 점수를 제외한 1번부터 8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41.5점)하여 100점으로 환산

③ 투자성향 분류

가.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점수	투자성향
81점 초과	공격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적극투자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위험중립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안정추구형

43점 이하	안정형
--------	-----

나. 투자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투자자성향 상품위험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매우높은위험 (1등급)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높은위험 (2등급)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다소높은위험 (3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보통위험 (4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낮은위험 (5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매우낮은위험 (6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별지5]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 (은행용)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에 따라 고객님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을 위한 추가 질문		
다음 질문은 고객님의 재산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고객님의 월 평균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고객 제외)	☐ ① 400만원 이상 ☐ ② 200만원 이상 ☐ ③ 200만원 미만	
2. 고객님의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시 :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 5억원이고, 금융자산이 5천만원일 경우 10%	☐ ① 5% 미만 ☐ ② 5% 이상 20% 미만 ☐ ③ 20% 이상	
다음 질문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 여부 등 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에 해당 되십니까? ※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에 해당되실 경우 은행에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편입제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① 아니오 ☐ ② 예 (회사명 :)	
본인은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에 (본인 의 의 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
본인	의 대리인	 또는 서명
상담직원	 또는 서명	



담당자	확인자

[별지6] 투자자 성향 및 유형 분류(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용)

투자자 성향 및 유형 분류(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용)

1. 투자자 성향 및 유형 분류

- ① 은행은 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1]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별지5]의 '투자자 재무 상태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 성향을 파악한다.
- ② 은행은 [별지1] 및 [별지5]의 기초 평가결과를 통해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자 유형을 다음의 5단계로 분류한다.

점수	성향	유형
81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공격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위험중립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추구형
43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형

- ③ 전항에 의한 투자자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비지정형 금전신탁의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정보 파악 질문 중 아래와 같이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하여 투자자 유형을 재분류한다.

구분		위험감내도				
		단기 (6개월 이내)	단중기 (6개월 ~ 1년)	중기 (1년 ~ 2년)	중장기 (2년 ~ 3년)	장기 (3년 이상)
투자자 유형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안정형	안정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 ④ 제②항과 제③항의 투자자 유형 분류가 서로 상이할 경우 두가지 투자자 유형 분류를 상호 비교하여 낮은 유형을 우선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유형을 분류하여 적용한다.

점수	유형 분류			
	최초 유형	투자예정기간	유형 재분류	최종 유형
81점 초과	공격투자형	6개월 미만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1년 이상 2년 미만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8점 초과 81점 이하	적극투자형	6개월 미만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1년 이상 2년 미만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2년 이상 3년 미만	공격투자형	
		3년 이상		
55점 초과 68점 이하	위험중립형	6개월 미만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2년 이상 3년 미만	적극투자형	
		3년 이상		
43점 초과 55점 이하	안정추구형	6개월 미만	안정형	안정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위험중립형	
		3년 이상	적극투자형	
43점 이하	안정형	6개월 미만	안정형	안정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안정추구형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위험중립형	

[별지7]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표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표(은행용)	
---	---------------------------	---

■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

본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는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고객님에게 적합한 유형별 일임형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고객 성명		분석 결과	
상담 지점		상담 직원	

※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아래 전산 입력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 설문 항목		전산 입력 결과
재산상황	1. 고객님의 월 평균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고객 제외)	
	2. 고객님의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에 대한 설명

점수	성향	유형 분류		
		최초 유형	투자예정기간	최종 유형
81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공격투자형	6개월 미만	위험중립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적극투자형
			1년 이상	공격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6개월 미만	안정추구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위험중립형
			1년 이상	적극투자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위험중립형	1년 미만	안정추구형
			1년 이상	위험중립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추구형	6개월 미만	안정형
			6개월 이상	안정추구형
43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형	기간 무관	안정형

■ 본인은 귀 행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투자자 유형 분류를 위한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작성한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 본인의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주은행에 통지하여야만 본인에게 적합한 신탁상품을 재추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매년 본인의 재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 편입제한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본 금전신탁상품을 통해 해당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 그 내용을 선출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과, 상품 가입 후 해당될 경우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작성한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 내용과 전산입력결과가 (일치)하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가 산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	본인	의 대리인	 또는 서명
-----	---	--------	----	-------	---



투자자 유형 분류 결과표 (2025.12 제정)



(1-1)

담당자	확인자

[별지8] 적합성 판단 기준(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용)

적합성 판단 기준(비지정형 금전신탁 계약용)

1.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며,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함

2. 투자자 재무상태 확인서 Scoring 기준

① 문항별 배점

문항	항목에 따른 배점					
	①	②	③	④	⑤	⑥
1번	3	2	1			
2번	3	2	1			

※ 투자자의 소득수준,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에 대해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점

② 점수계산방법

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총점 44.5점)와 1번부터 2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총점 6점)를 합산(총점 50.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 투자자 정보 확인서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가 39점이고, 1번부터 2번까지의 점수가 6점인 경우, $45점 \div 50.5점 \times 100 = 89점$ (소수점 이하 절사)

나. 법인의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서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총점 41.5점)와 2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총점 3점)를 합산(총점 44.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③ 투자성향 분류

산출된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 및 최초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투자자 유형으로 분류한다.

점수	성향	유형 분류		
		최초 유형	투자예정기간	최종 유형
81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공격투자형	6개월 미만	위험중립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적극투자형
			1년 이상	공격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6개월 미만	안정추구형
			6개월 이상 1년 미만	위험중립형
			1년 이상	적극투자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위험중립형	1년 미만	안정추구형
			1년 이상	위험중립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추구형	6개월 이내	안정형
			6개월 이상	안정추구형
43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형	기간 무관	안정형

[별지9]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 (은행용)	
---	--------------------------------	---

관련 법률에 따라 제주은행이 일반투자자인 고객님에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하려는 때,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님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님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고객님께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악한 정보는 고객님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제주은행의 권유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무(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파생상품이 그 고객님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고객님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제주은행은 고객님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유형	☐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생년월일	

1. 고객의 재무현황

자산 총계		외화자산 총계	
부채 총계		외화부채 총계	
연간 수출 총액		연간 수입 총액	
금융투자자산 보유 금액(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			
보유중인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 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2.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님께서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

3. 기대이익(손실)을 감안한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예	아니오
기대이익(손실)을 감안하여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원금손실이 무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음과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감수해야함을 이해하였습니까?	☐	☐

4.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통화(환율)	이자율(금리)	상품(Commodity)	기타
☐	☐	☐	☐

5.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 경력 또는 자격	☐ 환관리 업무 담당 ☐ 외환관리사 ☐ 외환전문역 ☐ 없음 ☐ 기타()		
장외파생상품 지식 정도	☐ 상(전문가 수준) ☐ 중 ☐ 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은행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 경력 또는 자격	☐ 환관리 업무 담당 ☐ 외환관리사 ☐ 외환전문역 ☐ 없음 ☐ 기타()		
장외파생상품 지식 정도	☐ 상(전문가 수준) ☐ 중 ☐ 하		

※ 최고 의사결정자와 거래체결 담당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고객님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의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아니오
	☐	☐

※ 고객님의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제주은행과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을 신고 해야하며, 필요시 거래 인감(서명감)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	☐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규정, 내부통제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	☐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	☐

7. 금융거래수준

상품종류	거래경험 보유여부	거래연수	비고	
			건수	거래규모
선물환 (FX Forward)	☐	년		
FX스왑 / 통화스왑 (CRS)	☐	년		
통화옵션 (FX Option) (TRF 등)	☐	년		
이자율 스왑(IRS)	☐	년		
구조화 이자율 옵션 (Exotic IRS Option)	☐	년		
상품 파생 (Commodity)	☐	년		
기타유형()	☐	년		

※ 고객님의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은행용)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분류

B등급	C등급
· 개인사업자 · 비상장법인인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자 · 주권상장법인인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자	· B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법인 · B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위험관리능력, 금융거래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주은행이 C등급으로 분류한 자

■ 고객분류에 따른 위험도별 적합한 상품

고객분류	상품분류		
	I 단계(저위험) (이자스왑, 옵션매수)	II 단계(중위험) (통화선도, 통화스왑)	III 단계(고위험) (통화옵션 등 기타)
B등급	○	○	X
C등급	○	○	○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은행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분류한
투자자 유형 등급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본 정보제공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본 서류에 제공한 정보는 투자조언 또는 투자권유 등의 근거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분석결과
	등급

■ 고객확인

본인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는 본인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무(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연령,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은 본 분석결과에 따른 투자등급을 안내 받았으며, 본 확인서 사본을 지체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 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인의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은행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제주은행	지점	담당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	-----	--------------	---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 (2025.12 제정)



(3-3)

담당자	확인자	전결권자

[별지10]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위 분류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의 경우 해외뮤추얼펀드 관련 선물환만 거래 가능

1.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주의	경고	위험
· 이자율스왑 · 옵션매수	· 통화스왑 · 선도거래	· 기타 장외파생상품

2. 개인 투자자의 분류

A등급	B등급	C등급
· 만65세 이상이며 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 미만	· 만65세 이상이며 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 이상 3년 미만 · 만65세 미만이며 투자경험 1년 미만	· 기타

※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의 나이와 투자경험에 따라 3단계로 분류

3. 법인 및 개인사업자 투자자의 분류

B등급	C등급
· 개인사업자 · 비상장법인이며 파생상품투자경험 3년 미만 · 주권상장법인이며 파생상품투자경험 1년 미만	· 기타 법인 · B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위험관리능력, 금융거래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주은행이 C등급으로 분류한 자

4.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 기준

구분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개인	법인			
A등급	-	○	X	X
B등급	B등급	○	○	○
C등급	C등급	○	○	○

[별지11]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Ⅰ.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¹을 제외한다.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은행')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금소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
- ② 은행이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은행은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금소법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3호)
- ③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은행이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은행은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은 「집합투자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위험등급 체계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은행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²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① 시장위험³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② 신용위험⁴ 등급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¹ 연계투자 및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금소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²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환매·매매의 용이성, 환율의 변동성,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금소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 금소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금소법 감독규정 제12조)

³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⁴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 (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AAA ~ AA-		A+ ~ A-	BBB+ ~ BBB-	BB+ ~ 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 국공채 등이란, 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⁵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⁶은 설명서(금소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기재한다. 은행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⑥ 법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⁷으로 한다.

⑦ 은행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Ⅱ.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⁵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⁶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⁷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은행은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① 은행은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② 은행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 감독규정 별지3 제2호)

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1. 집합투자증권 - 공모펀드

- ①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이상), CP(A2-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②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⁸ 사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⁹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나.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¹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③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1.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집합투자증권 - 사모펀드

- ①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②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⁸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¹⁰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예시]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주의', '경고'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3. 파생결합증권

- ①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분	MR1	MR2	MR3	MR4	MR5	MR6
CR1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	1	2	3	4	5	6

※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고위험

- ②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예시]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
1.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 ¹¹ 을 부여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①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③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④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⑤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밖에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¹¹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등급, 90% 이상 95% 미만 4등급, 80% 이상 90% 미만 3등급)

- ③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¹²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④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⑤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⑥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①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②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③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① 회사채¹³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②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¹⁴ 상향)하고,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③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①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②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¹²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¹³ 법 제4조제1항 및 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¹⁴ 예)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③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¹⁵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 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Ⅲ.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위험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낮은위험	낮은위험	다소낮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투자자구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펀드	설정 3년 미만 (상품군별)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 특수하여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20% 초과)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고위험자산 80% 이상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고위험자산 80% 미만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20% 이하)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고위험자산 50% 미만 중위험자산 최소 60% 이상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저위험자산 최소 60% 이상 파생결합증권 (원금보존추구형)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MMF 단기국공채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설정 3년 경과	97.5% VaR 수익률 변동성	50% 초과 25% 초과	50% 이하 25% 이하	30% 이하 15% 이하	20% 이하 10% 이하	10% 이하 5% 이하	1% 이하 0.5% 이하
특정금전신탁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 ELS / DLS / ELW 등	원금부분보장 ELS (최대손실률 20% 이내)	ELB / DLB (A+ ~ A-)	ELB / DLB (AAA ~ AA-)		
			주식	주식 (가치주 등)	주식 (가치주 등)				
			ETF	ETF (1등급) / ETN (1등급)	ETF (2등급)	ETF (3등급)	ETF (4등급)	ETF (5등급)	ETF (6등급)
			채권	신종자본증권 (BBB+ ~ BBB-) 조건부자본증권 (BBB+ ~ BBB-) 주식관련사채 (BB+ 이하)	신종자본증권 (A+ ~ A-) 조건부자본증권 (A+ ~ A-) 투기등급 (BB+ ~ BB-) 주식관련사채 (BBB- 이상)	신종자본증권 (AA+ ~ AA-) 조건부자본증권 (AA+ ~ AA-) BBB+ ~ BBB-	A+ ~ A-	AAA ~ AA- 단, 특수채 (AA+ ~ AA-) 은행발행금융채 (AA+ ~ 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AAA) 은행발행금융채 (AAA)
			수익증권	수익증권 (1등급)	수익증권 (2등급)	수익증권 (3등급)	수익증권 (4등급)	수익증권 (5등급)	
			단기상품		CP / 전단채 (B+ 이하 또는 무등급)	CP / 전단채 (A3+ ~ A3-)	CP / 전단채 (A2+ ~ A2-)	CP / 전단채 (A1) 기간물 RP 발행어음 (AA- 이상 기간물)	일일물 RP 발행어음 (AA이상 일일물) 은행발행 CD 콜론 증권금융예수금
			기타	레버리지 내재 상품				예적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증권금융 예수금 예적금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
			장외파생상품 위험구분			III 단계 (적색)	II 단계 (주황색)	I 단계 (노란색)	[펀드]
위험도			위험	경고	주의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 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5. 97.5% VaR는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장계수 ($\sqrt{250}$)를 곱해서 산출 6. 설정 3년 경과된 펀드의 위험등급은 재산정 시점에 따라 97.5% VaR 또는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 ※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매우낮은위험은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미일 뿐, 손실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손실요소가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외파생상품			I, II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선도거래 통화스왑	이자율스왑 옵션매수				

¹⁵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제4항 후단(고난도금융투자 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위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 분류를 세분화 하거나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추가 분류 가능
- ※ 은행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지도를 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 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해야 함.

[별지12]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이 보호기준은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은행은 만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판매를 자제한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 유선 확인 절차를 거치며,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제3조(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 ①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총괄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는 소비자보호부로 하되, 세부 추진은 개별 운영부서가 담당한다.
- ②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③ 영업점 전담창구의 경우, 영업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투자상품 판매 경험이 1년 이상인 직원에 한하고 실제 상담과 신규가 가능한 창구 직원으로 지정한다.
- ④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 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하여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4조(고령투자자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투자자 정보 분석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위험등급 1~5등급 상품의 신규가 제한된다.

- ① 금융투자상품(펀드, 신탁 등)에 대하여 스스로 투자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투자자
- ②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원금보전 추구 선택
- ③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 '안정형' 고객

제5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당행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가. 일반적으로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등을 들 수 있다.
(예시 : ELF, ELT, 레버리지 펀드와 같은 파생상품, 특별자산펀드 등)
 - 나. 일반적으로 거래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 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신상품 개발 또는 상품 선정 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며,

고령투자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추가 점검하며,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제6조(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 시 사전 확인)

- ①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 가입 전 관리직 직원(영업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 면담(투자권유 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와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은행이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의 사전 상담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근황문의 등)
나. 투자자금의 성격(생계자금 해당여부 등)
다.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등)
라.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등)
마.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⑤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 투자)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제7조(녹취제도 및 숙려제도)

은행은 만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제8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내부통제 강화)

- ① 당행은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해피콜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①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다.
- ② 전향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한다.
가.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나. 전향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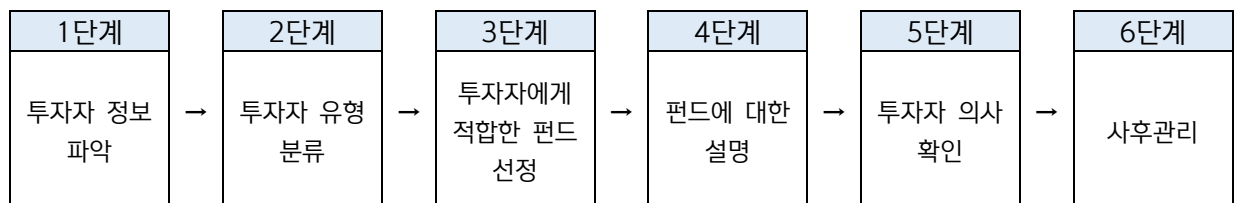
[별지13]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

1. 제정목적

본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제정된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당행의 업무절차와 주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펀드판매절차



3. 판매 단계별 세부절차 및 주의사항

1단계 : 투자자 정보 파악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권유 여부를 파악한 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이하 '투자자 정보')을 파악

※ 펀드 판매(상담 포함)은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하다.

①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펀드 상담 또는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상담 전담창구로 안내한다.

②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한다.

가.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투자자로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이동하지 않는 한 일반투자자로 대우한다. (투자자 구분 전환 신청서 징구)

③ 펀드상담 또는 매수 전에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로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투자자의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나. 다만,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 ④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MMF에 신규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다.
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다.
- ⑤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은 최종 투자자 정보 분석일자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신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는 기존에 선택한 투자자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⑥ 투자자 정보 확인 결과,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원금보전을 추구함', 또는 투자가능기간 '6개월 미만' 선택 시 낮은위험(5등급) 이상 상품을 가입할 수 없다.
- ⑦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나목(재권유금지)에 의거하여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다만,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재권유 금지 등록에 대해 투자자가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받을 수 있다.
- ⑧ 투자자 정보 파악은 원칙적으로 개인투자자 본인(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가능)으로부터 해야하며, 법인투자자의 경우 집합투자상품 투자위임장 징구,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한 후 대리인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징구 요령

명의인	구분	대리인	징구서류	
미성년자	신규·환매	친권자	부 & 모	· 부 & 모 실명확인증표 · 자녀 기준 발급된 기본증명서 ^{주1} · 자녀 기준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2}
			일방내점 ^{주3}	· 내점한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자녀 기준 발급된 기본증명서 · 자녀 기준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 기준 발급된 기본증명서	
법인	신규·환매	대표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 법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 법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신규시)집합투자상품 투자위임장 / (환매시)위임장	

주1) 특정 기본증명서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에 한함

- 주2) 친권자 모두와 자녀가 확인되는 부 또는 모 기준의 일반(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주3) 친권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지정된 경우 포함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효기간 최근 3개월 이내

2단계 : 투자자유형 분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상담결과 등을 점수화(Scoring System)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일정 유형으로 분류

-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한다.

공격투자형	81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적극투자형	68점 초과 81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위험중립형	55점 초과 68점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금 또는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안정추구형	43점 초과 55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금 또는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형	43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②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를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본인의 위험 등급(투자성향)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의미, 즉 투자자 위험 등급 분류 체계와 투자자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며, 어떤 펀드(상품)가 권유 대상인지 등을 설명한다.
 ※ 위험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 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3단계 :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펀드 선정, 투자권유

- ①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상품을 선정하여 투자권유를 한다.

투자자성향 상품위험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매우높은위험 (1등급)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높은위험 (2등급)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다소높은위험 (3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보통위험 (4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권유불가 (신규불가)
낮은위험 (5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불가 (신규불가)
매우낮은위험 (6등급)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 펀드별 위험등급 부여 기준

- 당행의 펀드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별지11]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선정 가이드라인'의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위험등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하여 펀드를 권유해야 한다.

※ 투자자에게 펀드 권유를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사례

- 투자가능기간이 6개월 이내인 투자자가 낮은위험(5등급) 이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일정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주택전세자금, 아파트중도금, 등록금 등)을 낮은 위험(5등급) 이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② 투자자가 투자자 유형 분류에 따른 판매사 권유 펀드를 거부하고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에게 제주은행과 계열회사 등인 집합투자회사의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회사가 제주은행과 계열회사 등임을 고지하고, 다른 집합투자회사의 펀드를 함께 권유하여야 한다.

4단계 :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 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방법 등을 설명

①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증권(공모) 상품설명서(고난도펀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추가)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핵심상품설명서, 집합투자증권(사모)상품설명서 등

②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가. 펀드의 명칭 및 종류, 구조, 한글클래스명칭
- 나. 펀드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다. 펀드의 투자전략,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마.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바.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사. 펀드의 매입 및 환매기준가 적용,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아. 펀드의 환매는 반드시 투자자 본인만 가능
- 자.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 차.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
- 카.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은행이 정한 사항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 투자기업의 부도위험, 금리변동위험) 외에 환율변동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 비율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별 투자비율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 상황 등

※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정보(기초자산, 수익구조, 조기상환 조건 등)
-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

※ 사모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에 의거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 및 수시공시 의무 적용되지 않음(단,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1개월 내에 펀드가 임의해지 됨

- ③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펀드(또는 펀드와 관련된 계약)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펀드가 투자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집합투자상품 신규가입신청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및 비예금상품설명서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5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권유를 중단
-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투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경우, 권유를 중단
-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는 경우, 집합투자상품 신규가입신청서 등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①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한다.

다만,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만 판매 절차 3단계 및 4단계 반복하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를 종료한다.

- ②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집합투자상품 신규가입신청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절차를 진행한다.

- ③ 투자자에게 4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비예금상품(집합투자상품) 설명확인서에 투자자로부터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포함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자필 또는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④ 투자자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세심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며, 4단계에서 펀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에도 주요 손실구조 및 위험 등 펀드투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급적 투자권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 만65세 이상 투자자, 당행 펀드가입 무경험자,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문맹자 등
- ⑤ 펀드 판매 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펀드에 대하여 수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의 이용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6단계 : 사후관리

- 투자자의 펀드 가입 이후 수익률 현황 및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
- 주기적인 실질투자수익률 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 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사후관리서비스(운용보고서 발송, 수익률 전자메세지 서비스, 실질투자 수익률 보고서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 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② 청약철회권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사가 접수되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 요청이 접수되면 「위법계약해지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4. 기타

집합투자상품(펀드)을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직원은 본 표준판매 매뉴얼 뿐만 아니라,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14] 투자자 구분 전환 신청서

 투자자 구분 전환 신청서	
---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직장전화)	
E-Mail		휴대폰	

■ 일반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전환 신청

본인은 제주은행과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제주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연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전문투자자로 전환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 등 일반투자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로 전환됨으로써 증가하는 위험 및 손실을 감수할 것이며,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듣고 이 해 하 였 음)을 확인합니다.

전문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확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은행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불완전판매를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투자자		대리인 신청	본인		의 대리인	
-----	---	--------	----	--	-------	---

■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전환 신청

본인은 제주은행과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제주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연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신청에 의하여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반투자자로의 분류 및 일반투자자 관련 법령에 의한 거래의 제한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본인에게 발생하는 위험 및 손실 또는 거래상 불편 등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대리인 신청	본인		의 대리인	
-----	---	--------	----	--	-------	---

상담직원	
------	---

※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징구받아 발급회사에 발급번호, 발급일자, 잔존유효기간 등을 확인



담당자	확인자	전결권자